

1. 제안이유

국가유산 산업 분야의 장기적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가유산 전문인력 양성이 해당 산업의 취·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취·창업 장학금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국가유산 산업분야에 일정기간 종사할 것을 서약한 학생: 수업료 감면 및 학자금 보조(안 제2조제1항제6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기 확 보

다. 합 의 : 생 략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국가유산 산업분야에 일정기간 종사할 것을 서약한 학생: 수업료 감면
및 학자금 보조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)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은 「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(이하 “학생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. 1. ~ 5. (생략) <u><신 설></u> ② · ③ (생략)	제2조(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국가유산 산업분야에 일정기간 종사할 것을 서약한 학생: 수업료 감면 및 학자금 보조</u>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